

투자계약, RCPS 신주인수계약,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합의서 + 대표이사 연대보증 효

력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



## 1. 사안의 개요

- (1) 피투자회사 A에 투자회사 B의 투자계약, 60억 투자, 피투자회사의 RCPS 인수
- (2) 합의서 작성 - A에서 B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 합의금 급 약정
- (3) 피투자회사 A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합의금 지급 연대보증

## 2. 피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주장 및 쟁점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피투자회사의 주주인 투자회사 원고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2)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상법 제462조에 위반되어 무효

(3)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합의서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 3. 법원 판결 요지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에 대해 부종성이 있는바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하는데,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판결이유 - 합의서 무효사유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

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참조).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